

의안번호	제 750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

발의자	이상욱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

(이상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발 의 자 : 이상옥, 박형용, 이숙애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
송미애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나.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다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라.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마.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60호
- 다. 협의 : 여성가족정책관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디지털성범죄”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·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허위 영상물 편집·합성·가공 및 반포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.

1.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3.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
제6조(피해자 지원)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, 수사기관·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
4.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 유포 및 삭제 지원 현황 모니터링
5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
6.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 및 홍보)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·군,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,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9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법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 등) ①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·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·운반·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③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·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·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④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·청소년을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⑤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20. 6. 2.>

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

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- 제35조(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)**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“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

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5. 29., 2021. 1. 12.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. 21., 2014. 5. 28.>
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, 전보,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. 12.>

④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2. 3., 2021. 1. 12.>

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제13조(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)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0. 5. 19.>
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
-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“반포등”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-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20. 5. 19.>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설 2020. 5. 19.>
-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<신설 2020. 5. 19.>
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<신설 2020. 5. 19.>

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[본조신설 2020. 5. 19.]

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및 피해자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·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)
- 안 제6조(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)
- 안 제7조(도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2021년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기준으로 하되,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산출

- 2022년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(국비매칭)

※ 2021년 7개 광역시도 지정 운영중(전국 확대 계획)

- 2024년부터 디지털성범죄지역센터 운영계획(종사자 2인→4~6인 확대)

※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(6명), 경기도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운영(18명)

나. 추계 결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901,8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	901,800	84,000	96,800	180,000	266,000	275,000

※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: 별첨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	
세 입	84,000	96,800	180,000	266,000	275,000	901,800	
국비	42,800	43,400	44,900	46,000	51,000	228,100	
도비	41,200	53,400	135,100	220,000	224,000	673,700	
세 출	84,000	96,800	180,000	266,000	275,000	901,800	
상담 종사자 인건비	72,000	74,800	155,000	241,000	250,000	792,800	
피해자 법률·의료·수사지원 등	10,000	10,000	20,000	20,000	20,000	80,000	
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	2,000	2,000	5,000	5,000	5,000	19,000	
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	-	10,000	-	-	-	10,000	
재원 조달	84,000	96,800	180,000	266,000	275,000	901,800	
의존 재원	소 계	42,800	43,400	44,900	46,000	51,000	228,100
	보조금	42,800	43,400	44,900	46,000	51,000	228,100
자체 수입	소 계	41,200	53,400	135,100	220,000	224,000	673,700
	지방세	41,200	53,400	135,100	220,000	224,000	673,700